

■ 본회, 농장검정 시행요령 마련 ■

본회 종돈능력검정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위원회의를 열고 농장검정 시행 요령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검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농장검정 시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농장검정 시행요령(1988. 7. 5 검정위원회 결의사항)

1. 검정요건

가. 모돈보유 두수

농장검정을 실시할 농장은 순종생산을 위한 최소 모돈보유 두수가 40두 이상 확보된 농장이어야 한다.

나. 개시두수와 체중

개시두수는 암수 구별없이 20두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 20~30kg(25kg±5)일때 개시한다.

다. 종료두수와 체중

종료두수는 개시두수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90kg±15) 75~105kg 일때 종료시킨다.

(단, 수의사의 진단서와 이표가 나타나는 사진 등의 증명자료나 검정요원이 인정할 수 있는 두수는 예외로 한다.)

2. 의무

가. 검정돈은 검정개시일에 혈통등록을 신청하고 종로 일전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검정요원에게 다음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 종돈보유 두수 및 순종생산용 종돈두수와 검정사료 성분확인서(별첨양식)

(2) 소정의 검정회비는 검정개시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최근 6개월 동안 오제스키질병과 돼지콜레라, 단독,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질병에 대한 3개월 내의 무발생 확인증 사본과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합격율

농장검정의 합격율은 선발지수에 근거하여 상위 50% 이상으로 하되 품종별, 암수별로 5두 이내일 경우에는 성적을 참조하여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합격돈에 한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4. 등록취소

농장검정농장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농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성적의 발표

농장검정 성적의 발표시기와 방법은 검정위원회에서 결정기로 한다.

* 본 시행 요령은 1988. 8. 1일부터 적용한다.

알림 : 본지 10월호에 게재된 농장검정 시행요령은 본란에 게재된 내용이 잘못 게재된 것임을 알립니다.